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67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정태호·임광현·김영환

오기형 • 정성호 • 신영대

박홍근 · 김영진 · 윤호중

정일영 · 최기상 의원

(11인)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그러나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기본공제액을 1억으로 상향하고,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을 2 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하며,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방식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확정신고로 일원화함.

특히,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안 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나.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아니함.

다. 기본공제 대상자 금융투자소득 합산 제외(안 제50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 중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함.

라.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기간 연장(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87조의 4제2항제1호가목)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으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상향(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8 7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126조의4제4항)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률에 명시하고자 함.

- 사.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 삭제[안 제2장의2제6절 (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삭제 등]
- 아.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삭제[안 제127조제1항, 제128조제1항, 제 129조,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삭제 등]
- 자.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안 제129조제1항제 3호)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안 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 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 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나.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다.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4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제12조제3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제33조제1항제12호 중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를 "위반을 이유로"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중 "부대비용"을 "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전단 중 "20세 이하"를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56조의3제1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 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2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중"「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를"「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제2항 중 "25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호 중 "25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제1호가목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고"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제1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3제3항제1호 중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합계액"을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4제3항 중 "제87조

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과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5제1항 중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6제1항 중 "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를 "제87조의2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제87조의24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제10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제11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제119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비거주자"를 "비거주자(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를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 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적격외국 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 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제1항"으로 본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4제4항 중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제3호 또는 제9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1항 중 "징수일이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자'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계약"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및 제9호"를 각각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삭제한다.

제150조제3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6조의2제1항 중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 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6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분기"를 "분기 또는 연도"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4조의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임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69조 중 "소득세"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중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거나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1 6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 2.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 규정, 제177조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 3.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 제2조(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 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 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제7조(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조(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19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9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0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 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1조(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50조제3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6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비거주자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경 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 용역소득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189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5제6항을 삭제한 다.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혂 행 개 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 가. ~ 러. (생 략) 가. ~ 러. (현행과 같음)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 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 급받는 다음의 급여 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 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 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

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

버. ~ 저. (생 략) <신 설> 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 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버. ~ 저. (현행과 같음)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 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 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 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4. • 5. (생략)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5. (생략) <신 설>

②・③ (생략)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 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 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 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 되는 기준이 있을 것

4. • 5. (현행과 같음)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제20조(근로소득) ① -----

- 1. ~ 5. (현행과 같음)
-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 ·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 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②・③ (현행과 같음)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 1. ~ 11. (생 략)
-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u>위반에 대한 제재로서</u> 부과되는 공과 금
- 13. ~ 15. (생략)
- ②·③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2. (생략)
 -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 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 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과 <u>부대비용</u>을 필요경비로 한 다.
 - ② ~ ⑤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12
위반을
이유로
13. ~ 1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1. • 2. (현행과 같음)
3
<u>취</u> 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저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 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 2. (생략)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5
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
자산의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
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
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
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
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u>⑦</u>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
<u>.</u>
세50조(기본공제) ①

1. • 2. (현행과 같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생략)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 마. (생 략)

<신 설>

3
가. (현행과 같음)
나
20세 이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u>에서 같다)</u>
다. ~ 마.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②·③ (생 략)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경우로한정한다)하는경우에는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할수있다.이경우공제한도는연간 100만원으로한다.

② (생 략)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 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u> 노는 무양가족의 소늑금액 합</u>
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배
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금융투
자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underline{3} \cdot \underline{4}$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에 대한 세액공제) ①
<u>2027</u>
<u>년 12월 31일</u>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
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생 략)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2. (생략)
- ③ ④ (생 략)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1
<u>「자본시장과</u>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
장"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 3. 3명 이상인 경우: 연 <u>35만원</u> 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u>30</u> <u>만원</u>을 합한 금액
- ② 삭 제
- ③ ④ (생 략)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 7 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 법 등) ① (생 략)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 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 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 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

·.
1 <u>25만원</u>
2 <u>55만원</u>
3 <u>55만원</u>
<u>40</u>
<u> 만원</u>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
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
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세특
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
<u>76圣</u>

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 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 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 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 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 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 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 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생 략)
 -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세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 금액"이라 한다)에서 <u>250만원</u> 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 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다.

- 1. · 2. (생략)
-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u>250만원</u> 이하인경우
- 4.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생략)
 -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 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 1.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

5천만원-
<u>3신인전</u> -
tl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1.•2. (현행과 같음)
3
5천만원
4.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융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 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하다)

- 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제 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 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
- 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 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거나 제87조의25 에 따라 결정 · 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 일 것
- 2. (생략)
- ③ ④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가
<u>10년</u>
나 <u>신</u>
<u> </u>

- 2. (현행과 같음)
- ③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

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 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 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 하다.

-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5천 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가. ~ 라. (생 략)
- 2. (생략)
- ②·③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일부개정법률

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 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 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

제) ①
1
<u>1</u> 억
<u>원</u>

가.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 | <삭 제>

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 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 3. 제87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 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 분에 대한 소득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 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① 거 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삭 제>

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하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 한 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 세액(예정신고 대상소득금액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 한다)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 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또는 제87조의27에 따 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 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④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계산방 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 준 확정신고)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준 확정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 소득 총결정세액이 <u>제87조의</u> 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u>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u> 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 계액을 초과하는 자
- 2. (생략)
-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 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다만,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금융투자 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다만,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

1
<u>제82조</u>
<u>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u> <u>부과세액</u>
2. (현행과 같음)
3
<u><단</u> <u>서 삭제></u>
4
- <u>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u>
<u>.</u>

우는 제외한다.

④·⑤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① ·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① ·
 - ② (생략)
 -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 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 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 부과세액과 제127조에 따른 원 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 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 제 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 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 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④·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인브개저버류

린 1 / 11 0 日 린
세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
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① -
금융투자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
②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 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 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③ ~ ⑥ (생 략)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7조의22 및 제8 7조의2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 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국세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 ② (생 략)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 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 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 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
③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환급) ①
제87조의24
 ② (취레리 가ბ)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 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 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 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 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 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이 제87조의25에 따라 그 납 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4	
1. 제87조의24에	따른 확정신

고납부세액과 제87조의24에 고납부세액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 2. · 3. (생략)
-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② (생략)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 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 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단서 신설>

④ (생략)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 등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 례 등) ①・② (생 략) <신 설>

2.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③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현행과 같음)

이자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 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19조의2

-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 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을 신 청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 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 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제 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납 부하여야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 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 | <삭 제>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
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
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u>4</u>
<u>비거주자(제3항에 따</u>
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
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u>서 같다)</u>
·.
⑤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
하여 지급받는
<u><</u> 삭 제>

<u>춘</u> 국외투자기구 <신 설>

<신 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비거주자 또는 적격 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 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거주 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호의소득을 지급하는 자가제156조제1항"으로 본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④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연 <u>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⑤ ⑥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하다.

- 1. ~ 8. (생 략)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투자소득
- ② ~ ⑥ (생 략)
- ⑦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

세126소의4(국외선술사 국내구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1</u> 억원
⑤·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u>ম</u>]3
<u>\$</u>
1. ~ 8.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 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 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 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 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 ⑧ 제1항부터 <u>제7항</u>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한다.
- ⑨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u>징수일이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u>
-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⑧ <u>제6항</u>
 ⑨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u>징수일이 속</u>
<u>하는 달</u>
,
②

정하는 <u>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u> 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 3. (생 략)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 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 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 2. (생략)
-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립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u>원천징수의무자</u>
<u>.</u>
1. ~ 3.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1.・2. (현행과 같음)
3
계약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 다.

4. ~ 8. (생략)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② ~ 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 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 3. (생략)
-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4. ~ 8. (현행과 같음)
< <u>식 제></u>
② ~ ③ (현행과 같음)
4
<u>제2호</u>
1. ~ 3. (현행과 같음) ⑤
<u>ম</u> 2 <u>ই</u>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 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 징수세액으로 한다.

- 1. 2. (생략)
-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 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 다)을 한도로 한다.
- 1. (생략)
- 2. 제127조제1항제9호의 금융 📗 투자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 라 계산한 금액

공제한도금액 = A × $\frac{B}{C}$

- A: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 간의 반기별 금융투자소득세
-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 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반기별 합계액
- C: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 간의 반기별 금융투자소득금액
- (7)·(8)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1. • 2. (현행과 같음)
6
,
1. (현행과 같음)
<삭 제>

(7)·(8)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금 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기간"이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 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 2.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까지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 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금융투자소 득 원천징수기간의 종료일에 원천징수한다.
-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

일부개정법률 <삭 제> 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 적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보유 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 출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상반기의 계좌보유자별 금 융투자결손금은 하반기의 원천 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서 공제한다.
- 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 장수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⑥ 금융회사등은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을 원천 징수에서 제외하고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통령이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 절차, 기본공제 적용방법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금 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는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 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 자별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 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반 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까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삭 제> 에게 그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 장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본다.

②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 무자는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금 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저 ·② (생 략)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 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

세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2027년 12월
31일	
	<u>100</u>
분의 3	

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 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 나 징수한다.

- ④ ~ ⑥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 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127조제7항에 따라 원천 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제127조 제1항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제148조 의2 및 제148조의3을 준용하 여 징수할 것
- 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 | 신청) ① -----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100분의 3
④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 |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 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 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 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 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 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 • 면제 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 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 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u>사업소득</u>
② ~ ⑦ (현행과 같음)
세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
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7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 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 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 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 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u>을</u>	초괴	가하는	경우	에는	해딩	<u> 카</u>
세	기간	에 받-	은 기	부금여	게 대	하여
ユ	기투	브금을	받은	날o] 속	하는
<u>연</u>	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까지
<u>전</u>	자기	부금영] 수증	을	발급	하여
야	한다	<u>}.</u>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1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 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 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 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 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 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 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 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 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 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 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

소득 <u>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u> <u>반기의 마지막 달</u>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 1. ~ 8. (생략)
- 9. 금융투자소득
- ② ~ ①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u>달</u>
1. ~ 8.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 ~ ⑪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의 제출) ① <u>「가상자산 이용자</u>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u>분기 또는 연도</u>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
<u>는 국세청장</u>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
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기근르 계츠치기 시니하 겨으에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내국 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해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 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u>임원</u>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 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가.·나. (생 략)

2. · 3. (생략)

②·③ (생 략)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 제 은 제150조에 따라 <u>소득세</u>를 징

<u> </u>
<u>수 있다.</u>
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1
<u>임원</u>
등(임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나.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169조(교부금의 지급)
근로소득에 대

는 그 시정에 필요하 명령은 한

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 · 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①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이하이 조에서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관하여야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 략)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 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 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u>제3호</u> 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 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